



제 429회 국회 (임시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화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9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포·화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8.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포·화약류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드러났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정보를 인식한 경우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총포·화약류 관련 위법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현행	개정안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금지하는 <u>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되어 사망하고, 최근 인천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총포 제작

관련 불법 정보를 기반으로 한 중대한 사회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¹⁾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공개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나 신고·삭제 요청이 있으면,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조치의무사업자’는 이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총포·화약류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빈발하는 총기 범죄의 기반이 되는 불법 정보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해당 정보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나 신고·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유통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불법 정보의 유통 시간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총포와 화학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용할 필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와 화학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2)에 따라 화학류에 대한 정의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3)에 따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 등으로 총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문의 내용이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범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이라는 표현보다는 ‘해당 법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 조항에 총포류 등 성격이 상이한 내용의 포함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 방지 조항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범죄착취물 등에 대한 별도의 유통방지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항으로 총포류의 경우에도 성착취물 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같은 해 5월 국회가 불법촬영물 등(성폭력 동영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명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임.
- 총포류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통방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 법의 법체계와 해당 조항의 연혁 등을 감안하여 판단이 필요함.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은 연혁으로 볼 때,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조항으로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 정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온라인에서의 유통·재유통이 빠르고 광범위해 N차 피해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별도의 유통방지 체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성격과 상이한 총기 관련 정보를 불법촬영물등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입법취지와 법체계, 불법정보의 특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확대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법촬영물 원본뿐 아니라 동일·유사 정보의 재유통까지 차단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등’(디지털성범죄정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은 법체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총기 관련 정보’는 비난 가능성, 범죄 중대성, 피해 구제 측면에서 ‘성착취물 정보’와 성격이 달라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부과하기 어렵고, 개념 또한 모호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총포·화약류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의무가 없어 범죄 기반 정보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동 개정안은 이를 유통방지 대상에 포함해 불법 정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다만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해당 조항의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총포류 등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총포·화약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

※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48호)

[illegible]